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4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안 제60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가 동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안 제63조제1항) 및 약제비용의 부담 범위(안 제64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의료시설”을 각각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및 제4항(중전
의 제3항) 중 “의료시설”을 각각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51조제5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
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
다.

제61조의 제목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을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훈병
원”을 “보훈병원,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
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의료시설”을 각각 “의료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훈병원장”을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
체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보훈병원장”을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따른 의료시설 또는”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제60조(진료) ①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원진료: <u>의료시설</u> 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2. ----- <u>의료기관</u> ----- -----
3. 통원진료: <u>의료시설</u> 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3. ----- <u>의료기관</u> ----- ----- -----
<u><신 설></u>	② <u>법 제51조제5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u>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제61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

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

----- 의료기관-----

-----.

④ -----

-- 의료기관-----

-----.

제61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

----- 보훈병원,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

----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

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로 옮겨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장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

-- 의료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

죽이 법 제51조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51조의3에 <u>따른 의료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u>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 (생략)	----- ----- <u>따른</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연 락 처	(044) 202 - 5693